

## 오늘의 인권 현실과 과제

박래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이고, 국내에서도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믿는 게 대부분일 것이다. 필자도 이런 일반적인 평가에 대해 굳이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전처럼 정치범에 대한 무지막지한 고문과 강제 연행은 사라졌다. 그처럼 공포를 자아냈던 국가보안법도 이제 잡혀가도 대부분 2~3개월 살면 나올 수 있는 ‘종이 호랑이’ 처럼 되어 버렸다. 집회 현장에서 지랄탄이나 최루탄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국가가 나서서 인권 상담을 하고, 진정을 받아 조사까지 하게 됐다. 이런 몇 가지 상황들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인권 주소는 진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의 인권은 향상됐을까? 인권 상황이 나아졌다는 대부분의 평가가 완전히 그릇된 것은 아니더라도 의심을 자아내는 사례들도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수부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특수부 조사실에서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관들이 물고문까지 가했던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고문이라는 국가폭력의 대명사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

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 앞에서는 군의문사 유족들이 상복을 입은 채로, 군에 갔다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살려내라고 통곡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신종 노조 탄압책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가압류와 손배소송에 항의해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씨가 분신했지만, 이 노조 탄압과 저항의 대치 상황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9월 서울 중구청 앞에서 분신했던 노점상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11월에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내걸고 집단 단식농성을 벌였다. 더 나아가 지난 해 1월 운명환 1급 장애인 최옥란 씨는 버거운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리고, 필자가 이 원고를 쓰는 중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2백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 지난 해 6월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이 미 대사관을 포위했어도 한미행정협정 개정은 요원하다. 분명 한반도에까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전쟁을 막기 위해 '인간방패'를 자원한 양심들이 출국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미국이 요청하면 전투지원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상황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나지만 대체복무제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루탄이 사라졌지만 집회와 시위 장소에서 경찰의 폭력이 이를 대체해 많은 이들이 부상당하는 일이 비밀비재하다. 그리고, IMF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 사회에서 빈민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는 국제연구소의 발표가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7%라는 통계는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을 검토하자면 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이 향상됐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인권을 일면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애써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사회권)의 현실을 외면한다. 시민 정치적 권리(자유권) 영역에 대해서도 역시 일면적이다. 이는 정치범에 대한 고문이 사라졌으므로 우리 사회에 고문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정치범에 대한 고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일면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전두환 시절까지 들먹이면서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고 떠들어댈 것이다. 이런 일면적인 파악을 넘어 인권 문제와 인권 상황은 사회권과 자유권, 그밖의 영역까지도 아우르

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인간이 자유와 평등을 쉼 없이 지향하는 복잡하고 종합적인 존재이듯이, 인권 문제도 복합적인 면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제대로 보이는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리 추상적인 결론부터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변화된 인권의 지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변화를 압도하는 부정적인 변화의 흐름도 있다는 것이다. 이전 독재정권 시절과는 다르게 인권의 지형이 변화했고 복잡해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문제가 있는데도, 국가 영역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인권 상황의 개선 노력도 별반 경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때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는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그 엉킨 실타래를 제대로 풀어내야만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 인권 문제가 이처럼 복잡하게 엉키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여전히 인권 문제가 경제나 정치나 하는 주요 정책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무시가 국가와 사회 전반에 팽배하고, 인권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요란한 수사만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이어져 오늘날 인권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다. 그 전형을 우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변화된 인권 지형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인권의 현주소와 이후 대안의 고민도 가능해질 것이다.

### **김대중 정부와 인권 지형의 변화**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 위기와 더불어 출범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맞닥뜨린 비상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고스란히 수용했다. 더 나아가 IMF 협약에서도 제외됐던 정리해고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했다. 경제구조조정 정책은 “기업퇴출, 인수합병, 워크아웃, 정리해고, 비정규직화”로 현실화됐다. 그리고 노동권의 후퇴로 노동 불안정과 여성 빈곤이 심화됐다. 한때 실업률이 10%에 육박했던 상황과 청년 실업층의 증대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됐다. 이런 구조조정의 결과, 외형적으로는 IMF 체제를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에서는 빈부 격차가 심화됐고, 완벽한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하는 결과를 빚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 피해자로 국제 사회에 이름이 나 있었고, 그는 이런 과거 피해를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의 향상'을 국정지표로 내걸었고, 특히 국제 사회에서는 인권의 가치 증진을 연설의 주 내용으로 삼았다. 그런 이미지는 결국 그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줬다. 하지만, 위와 같은 IMF식 구조조정을 중심축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인권의 실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었다. 집권 중반을 넘어서던 때부터 민심이 이반됐던 것은 결국 구조조정의 결과에 의해 불평등이 심화된 데 따른 대중의 냉정한 평가요 반응이었다.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비록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공무원 노조는 불법 상태로 남아 있다)는 교육, 건강, 주거,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의 핵심적인 권리가 동반 후퇴하는 현상을 낳았다. 그리고 형식적인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보장 기본 체계가 갖춰졌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사회권의 전반적인 후퇴는 우리 사회 인권의 앞길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는 객관적인 규정 요인으로 등장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아진 인권 상황은 남북 상황의 변화에서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이라는 적극적인 북한 포용정책을 실천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장기수가 1999년까지 석방되고, 이후 북송을 원하는 상당수 장기수가 북으로 갈 수 있었다. 1988년 이래로 장기수 석방을 요구해 왔던 인권운동의 해묵은 과제는 남북 긴장관계의 완화라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 의해 실현됐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이루지는 못했다. 국제 사회에서 권고한 국가보안법의 7조 우선 삭제 뒤 전면적 폐지라는 단계적 폐지의 첫 단계조차 엄두를 내지 못해,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총 1천54명(2002년 12월 31일 기준)에 이르렀다. 사상전향제를 폐지한다면서도 보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변형된 사상전향제인 준범서약제를 등장시켰고, 정치범의 항상적인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나쳐 버렸다. 결

국 김대중 정부는 남북 관계의 완화를 꾀하는 정치적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이라는 사상 양심의 자유 보장이라는 자유권의 1차 관문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사상관계 법제만이 아니라 과거의 국가 범죄를 비롯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청산 과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1999년 말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 등이 통과된 것은 과거 청산의 중요한 전기로 삼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그 권한의 미흡함으로 인해 국정원과 기무사의 문서고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일부 진상을 밝힌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넘어버렸다는 이유로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최종길, 박영두, 김준배, 허원근,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서는 진실을 일부 규명했지만, 기존 범죄를 저지른 국가기관의 저항 앞에서 완벽한 진실의 규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집단 보상이 아닌 개별 보상 문제가 해결의 진전을 가로막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도 개별적인 인정과 보상이란 한계에 부닥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과거 청산이 전혀 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이 위원회들의 활동은 과거의 국가 범죄를 국가 차원에서 규명하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한 걸음 진전된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사과도 없고 가해자에 대해 처벌도 없는 과거 청산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불처벌의 상황은 인정하지만, 그 불처벌이 계속되어 가해자를 사회에서 축출할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일부 진전된 이런 상황과 더불어 유족들과 민간 단체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또한, 지금도 진행형인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군의문사 유족들의 투쟁과 항의도 계속 되고 있으며,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들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와 시위,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과 총기 남용,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폐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인신

구속의 관행, 의료나 수용시설면에서 턱없이 낙후한 구금시설, 예바다나 양지마을에서 보여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매매춘 여성들의 매춘 강요 행위와 인권 유린 등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인권 상황 아래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소수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쟁취 투쟁, 동성애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 이주노동자(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투쟁 등 그간 사회의 억압적 질서 속에 눌러지냈던 소수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소수자들의 부상은 다수자들의 전체화된 폭력과 억압 질서가 만연했던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촉구가 일어나게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 정책 중 그나마 성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였다. 인권 단체들이 3년 간의 설립 투쟁을 통해 독립국가기관으로 출범하게 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사건이 붓물 터지듯 밀려들었다. 국민들이 그 동안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던 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니 그곳으로 진정이 밀려 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진정 사건의 처리 과정은 너무도 느려서 신속한 구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번번이 어겼으며, 진정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이전의 보수적인 사법부의 판결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국가의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매우 적었고, 정책적인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더욱이 출범 초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데 헌신했던 인권 단체들을 배제하면서 인권 단체들의 지지도 얻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들에 포위되어 사면초가의 형상에 빠져들었다. 한 위원은 연초 집행부의 독선적 조직 운영과 관료화를 지적하며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는 더욱 실추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스런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단체 등의 비판적 목소리에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과 인권 문화를 선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몫을 해내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상이 김대중 정부 집권 5년 간의 초라한 인권성적표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던가. 김대중 정부는 그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인권 개혁을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IMF식 경제 개혁으로 인해 사회권의 후퇴를 초래했다. 그 부담은 노무현 정부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두꺼운 각질을 뚫고 지면으로 올라온 소수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과거의 문제에서 소수자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인권 지평이 넓어진 것은 오로지 그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당사자들과 인권 단체들의 노력 덕택이었다.

### 노무현 정부의 인권개혁 과제와 전망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권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이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에 획득한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카리스마를 발휘했던 것에 비해 노무현 정부는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우선 다르다. 그리고, 기존처럼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 창출에 성공한 정부라기보다는 대중적 인기에 힘을 얻어서 정권 창출에 성공했다는 점도 역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판 관행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정치 개혁을 선행하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창출해 가는 개혁성 강한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와 청와대 인선을 보면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들어갔고, 시민운동 계열에서 활동했던 진보적 지식인도 대거 포섭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권 창출 과정이 보여주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 때문에 크게 제약받을 수도 있다.

그 첫째는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전쟁 위기이다. 북한 핵 문제에서 야기됐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해 강화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노무현 정부의 이후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는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진행하면서 위기를 수습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자유주의적 정치 개혁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그것도 결국은 중국으로 진출하는 자본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순탄하게 찾아가기 위한 조건의 창출이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북한 핵 위기, 전쟁 위기를 제대로 넘지 못한다면(미국에 일정 정도 양보하는 것도 포함해) 남한 사회에서는 경직된 냉전체제 시기의 국민통제 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자유권적 인권의 후퇴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는 도저히 노무현 정부로서는 비껴갈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김대중 정부가 길을 닦아놓은 자본유치형 국가에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과 초민족적 자본의 유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를 우회할 수도 없으며, 이런 상황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특구를 통해 현실화될 것이다. 만일 노무현 정부가 이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IMF 개혁 정책에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고, 기껏 끌어들이는 해외 자본의 유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꿈쩍없이 이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권은 더욱 후퇴할 것이고, 하향 평준화된 사회안전망의 수혜만을 받게 되는 사회권적 인권의 절망적인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자유권적 인권 영역에서는 일정 정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사회권적 인권 영역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제 정책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만을 '차별해소'라는 미명 아래 은폐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진보적 지식인과 운동 진영이 강력하게 정부에 포섭되고, 서비스형 NGO가 정책적으로 육성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인권운동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까지 상존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인권 개혁에 대한 전망은 사실 어두울 수밖에 없으며, 인권운동은 이런 어두운 전망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자유권적 인권 영역의 적극적인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사회권적 영역의 후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을 조직해내야 할 것이다.

이런 전망 가운데에서 노무현 정부가 진행해야 할 인권정책 과제를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인권 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인권정책제안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8개 분야에 걸쳐서 인권 정책 과제들을 집대성한 이 제안서의 중심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이 제안서 총론은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인권을 현저히 후퇴시켜 생존권적 위협에 내몰리게” 했고, “우리 사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의 원시적 국가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국가폭력을 낳는 법제와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층이 겪어야 하는 소외는 극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새 정부는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 인권개혁 의지 천명,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권 보장, 차별 해소는 5대 차별만이 아닌 모든 차별 영역의 해소로,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국가기구와 법제를 개혁, 정부와 인권시민사회 단체와 항시적인 논의 체제를 갖출 것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유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견서 각론에서는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진상 규명 / 국가기구의 개혁 / 인권 교육의 전면적 실시 /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 경제 사회적 권리의 보장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에서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과 제도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 준법서약제의 폐지,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들었다. 이들 법제의 청산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인 법제로 지탄을 받아왔던 것들이다. 이들 법제를 폐지함으로써 새 정부는 인권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과거 중대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서는 과거의 국가 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독재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했던 정치적 의혹 사건 등의 해결과 한국전쟁 시기 전후의 민간인 학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특별입법의 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 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의 추진과 재심제도의 확대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가기구의 개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는 개혁 내지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하며, 군의 사법제도가 개혁되고 군내 사망 사건의 해결을 위한 민관군 합동 조사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도입되어야 하고, 조사 대상과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정규 교육 과정에 인권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공무원 언론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분야에는 여성, 어린이·청소년, 이주노동자(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성적 소수자, 에이즈 환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제시했던 정책들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과 관련해서는 5대 차별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모든 차별 영역(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18개 차별 영역 포함)에 대한 차별 해소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에서는 인신구속 절차에서 영장실질심사제의 전면화, 변호인 참여 보장, 국선변호인의 기소전 단계로 확대, 재소자의 의료권을 비롯한 수형 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을 철폐할 것, 프라이버시 통합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집적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의 전면 중단 등을 제시했다.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 빈민층을 증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파견근로 철폐)을 강구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는 노동 유연화 정책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노동권과 관련해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업무 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소추나 가압류 손배소송 등을 통한 파업권 억압을 없애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경제특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권이 악화되거나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권 외에도 주거, 건강, 교육, 사회복지 등 사회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 등도 제시됐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에서는 국제 사회의 기준과 권고에 맞게 국내 법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인권 조약 중 유보한 조항들의 철회, 미가입 중요 조약들의 가입, 외교에서 인권적 가치의 존중 등을 제시했다.

이상의 정책 과제들은 인권 단체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거나 주장했던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보할 수 없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정책의 수립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국가가 나서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가가 훨씬 적극적으로 인권 향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됐다.

그 외에도 주한미군 범죄의 근절을 위한 소파 협정의 개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인권 과제들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인권정책 과제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사항만을 놓고 보면 마치 인권의 개선이나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인권의 후퇴를 낳는 현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권적 영역의 인권 개혁이 성취되는 기만적인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제도는 개혁되지만 인권의 보장을 누려야 할 사람들은 그 제도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인권’이란 가치를 일면적인 것이 아닌 온전한 것으로서 인식하고, 인권 그 자체를 얼마나 비중 있게 고려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 개혁을 하든 경제 개혁을 하든, 사회 개혁을 하든 문화 개혁을 하든 인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향

상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보수적 인권 개혁과 진보적 인권 개혁의 근본적인 갈림길이 존재한다.

활동이 끝난 인수위의 정책보고서를 보면,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인권 항목은 제외됐다. 인권과 관련된 개혁 과제는 12대 주요 정책부문에 흩어져 있을 뿐이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5대 영역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정도와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부분 정도이다. 이 가운데 차별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김대중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모토와 함께 인권의 증진을 내걸었던 모순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모토를 주요하게 제시 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되는 노동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방점이 찍힐 것은 분명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유치형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좀더 쉽게 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된다면 인권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경제특구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특구에서는 기본적인 노동권이 모두 유보되며, 오로지 외자가 들어와 기업하기 좋은 상황만이 조성된다.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룬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로 돌리는 상황이 경제특구에서 이뤄질 것이고, 여기에 비례해 다른 지역에서도 경제특구 수준으로 노동권의 보장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관련해 우리가 노무현 정부에 걸고 있는 기대를 접어야 하는 순간이 의외로 쉽게 올 수 있을지 모른다.

인권 정책은 사후 약방문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이 그 시작이다. 그런데 그나마 미약하게 남아 있는 인권보장 시스템을 약화시킨 뒤에 최소한의 사회보장책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이나 뒤바뀐 형국이 될 것이다. 노동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를 정리해고 등으로 빈민으로 만든 뒤 그에게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저생계 보조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미 이런 상황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확인됐던 바, 노무현 정부의 인권정책 개혁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인권보장 체계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강화될 배제의 틀 속에 갇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인권운동의 방향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인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인권운동의 현실은 어렵다. 인권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와 큰 변화를 겪었다. 이전에 정치범 석방운동 중심의 인권운동은 질적·적 민주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되어 갔다. 그 공백에 새로운 인권 주체들이 들어차서 이제는 그 폭이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 과거 국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던 피해자 등이 새롭게 자기 주장을 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반면에 독재 정권과 치열하게 대립했던 종교권 인권 단체들을 비롯한 전통적인 인권 단체들은 그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인권 단체들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인권 단체들의 연대 기구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전문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권운동 진영의 단체와 전문가, 일부 활동가들이 정부에 포섭되어 갈 것이고, 거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등장하면서 민간 인권운동 영역에 대한 침식마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권운동은 이전에는 겪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상황에 부딪쳐 있다.

그렇다고 인권운동의 전망이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권운동은 그 동안 자생력을 키워 왔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권 문제를 인식하는 주체들이 자생적으로 집단을 결성해 왔다. 비록 구멍가게 수준의 조그마한 단체들이라도 이 단체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성장에 따라 인권운동 진영은 앞으로 수년 이내에 전혀 새로운 진용을 갖출 것이다. 지금껏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이 혼재되어 구분이 없던 인권운동 진영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정책 방향이 갈라질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발전의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나름대로 정리한다. 먼저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향후 인권운동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읽어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인권운동이어야 한다. 이런 인권운동을 '진보를 지향하는 인권운동'이라고 필자는 정의해 본다. 인권운동이 영원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는 해도 지금 신자유주의가 지구를 뒤덮고 있는 현실에서 몇몇 자유권 영역의 권리가 확장된다고 만족할 수는 없다. 인권운동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지향을 체득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보듬고 나아가는,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권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인권운동이 자유권 영역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고,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도 힘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제대로 견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IMF 상황에서 사회권이 심각하게 후퇴한 상황에서 자유권적 개선만으로는 인권운동이 할 일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결국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복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진보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의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WTO 체제는 반인권적 체제의 세계화에 다름 아니며,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해야 할 체제일 것이다. 권력의 개량적이고 기만적인 포섭 정책에 만족하는 인권운동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그런 인권운동만이 진보적 인권운동의 길이다. 자유와 평등의 어느 하나를 경시함 없이 동시에 추구해 나아가는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인권운동은 사회권 분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권이 갖는 특수성을 인식하고, 사회권을 인권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인권운동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권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운동 풍토가 자리잡혀야 하고, 인권운동가들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인권 단체들 간의 튼튼한 연대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진보운동과도 굳건한 연대를 형성해야 하며, 국제운동과도 연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아직 국내적 상황의 개선에만 머물러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제적인 무역시스템의 변화가 국내에서의 오랜 운동 성과를 한 순간 무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것,

다른 편으로 인권은 국제적인 시스템 속에서 깊은 연관을 갖고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적인 시야와 실제적인 연대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진보적 인권운동은 통일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내 인권운동은 그간 별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보수적인 단체들이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그 사회 구성원의 처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천착해갈 필요가 있다. 수구적 민족주의의 방향과도 다르며, 보수적 자본주의 시각과도 다른 진보적 인권운동의 눈으로 북한의 인권 현실을 인식하고 분석해 나아가는 노력이 비록 어렵다고는 해도 언제까지 뒤로 미룰 수는 없다. 지금 한국의 인권운동은 너무 오래도록 자신의 앞가림에 바빠 이 중요한 문제를 외면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정권 교체는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새 정부의 출범을 맞아 사회 곳곳에서 희망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를 향한 기대도 이전의 정부 때와는 남다른 것 같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일 뿐, 새 정부가 발 딛고 있는 현실과 발부리가 향하고 있는 곳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희망과 기대 뒤에 감춰진 정권의 본질적 제한성은 곧 인권 현실로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 그 본질적인 제한성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킬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종 사람들은 인권이 목적이며, 국가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 목적은 늘 수단에 의해 유린되어 왔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지금까지 국가의 물리적 폭력에 저항해 온 전통을 갖고 있다. 지금 한국의 인권운동이 저항해야 할 것은 생존권마저 보장하지 않으려는 신자유주의 WTO 체제이고, 이 체제에 종속되어 전락될지도 모르는 국가일 것이다. 현재의 국가를 목적을 위해 충실할 수 있도록 다그치는 일이 새 정부에서 인권운동이 여전히 수행해야 할 일이다. ■

---

박래균 laegoon@hanmail.net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국 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권운동사랑방 상임 활동가로 있다.